

<p>제2020-10호 2020년 1월 15일(수)</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128호	소규모 공공하수도(돌산읍 군내마을 및 두문포마을) 사용 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20-129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나진리 산34-1외)	9
○ 여수시 공고	제2020-130호	소규모 공공하수도(돌산읍 군내마을 및 두문포마을) 사용 공고(수정)	10
○ 여수시 공고	제2020-133호	도로지정공고(돌산읍 평사리 1395-8)	16
○ 여수시 공고	제2020-137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7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734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18
----------	-------	---------------------------	----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돌산읍 군내마을 및 두문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 공고 합니다.

2020. 1. 15.

여 수 시 장

1. 공공하수도의 위치 : 여수시 돌산읍 군내마을 및 두문포마을 일원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유입수질·용량

가. 군내마을

○ 유입수질

(단위:mg/ℓ)

BOD	COD	SS	T-N	T-P
156.9	90.7	166.4	58.2	5.4

○ 유입용량 : 750m³/일

나. 두문포마을

○ 유입수질

(단위:mg/ℓ)

BOD	COD	SS	T-N	T-P
160	120	180	60	7

○ 유입용량 : 750m³/일

3. 공공하수처리의 구분 : 분류식

4. 하수처리구역 면적 : (군내) 15.9ha / (두문포) 9.4ha

5. 열람서류 및 장소

가. 열람서류 : 하수처리구역도 및 기타 관련서류

나. 장 소 : 여수시 하수도과

6. 기타 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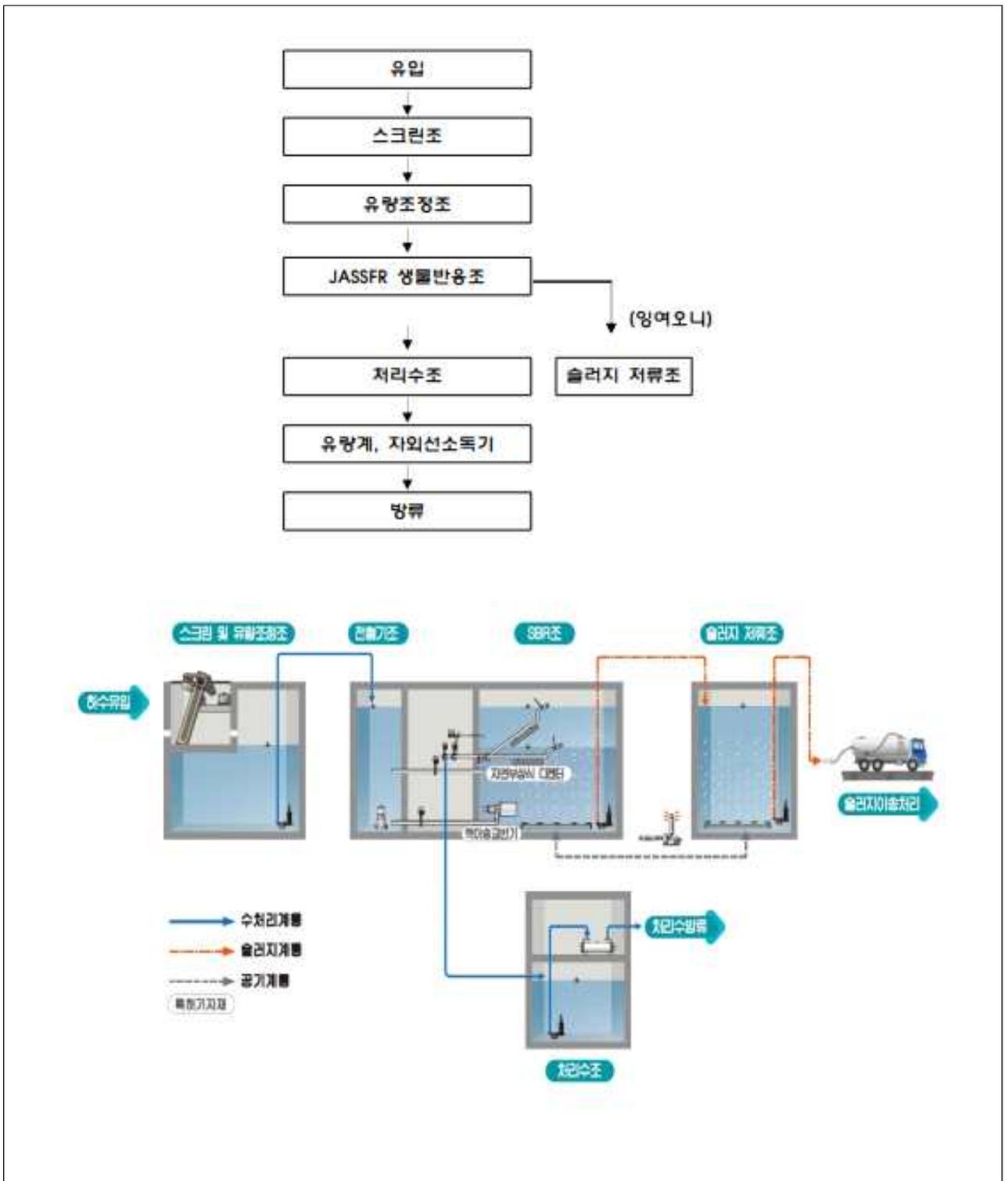
○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에게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하수도과(☎061-659-4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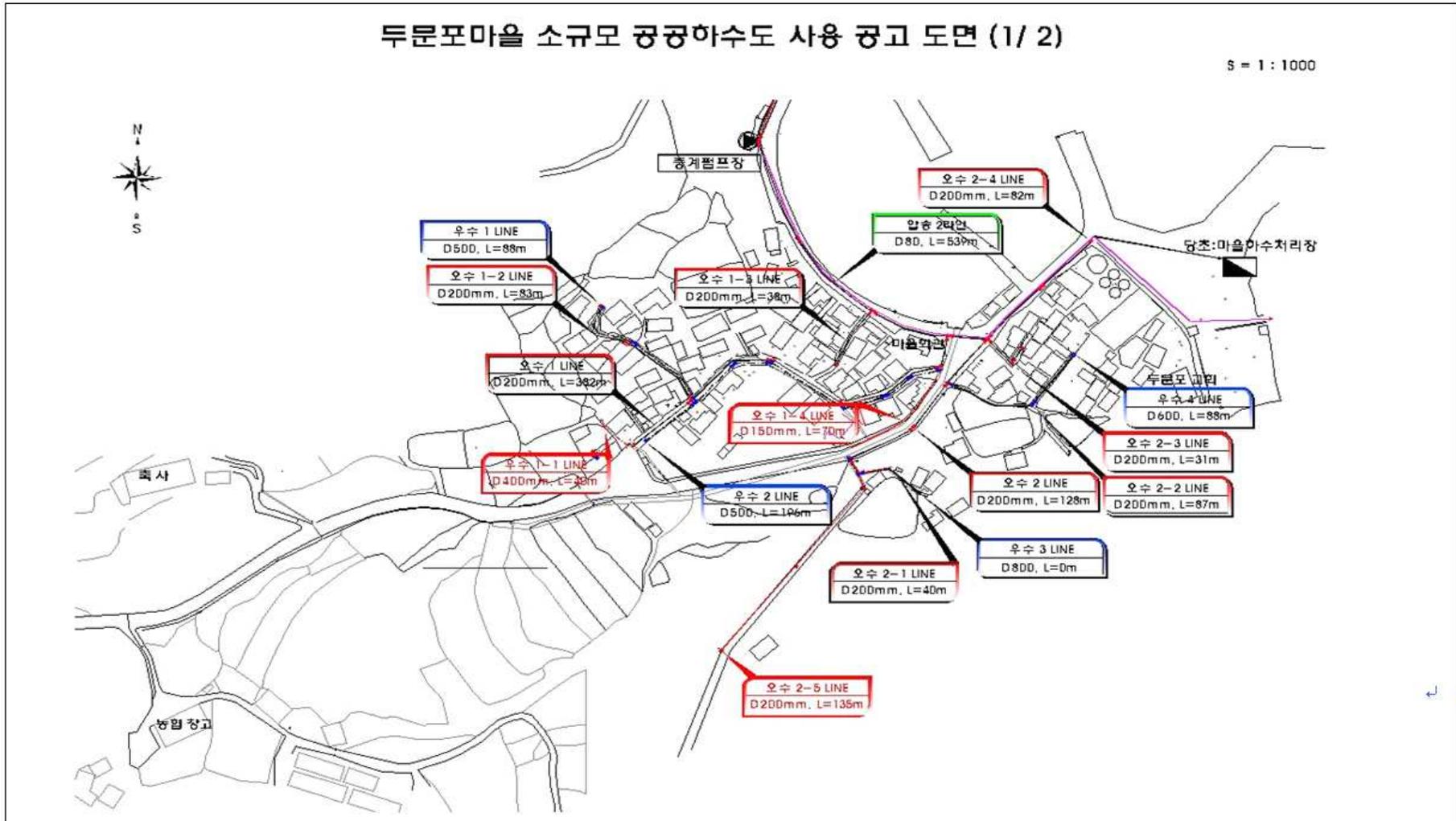
□ 군내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사용 공고 도면



□ 군내마을 하수처리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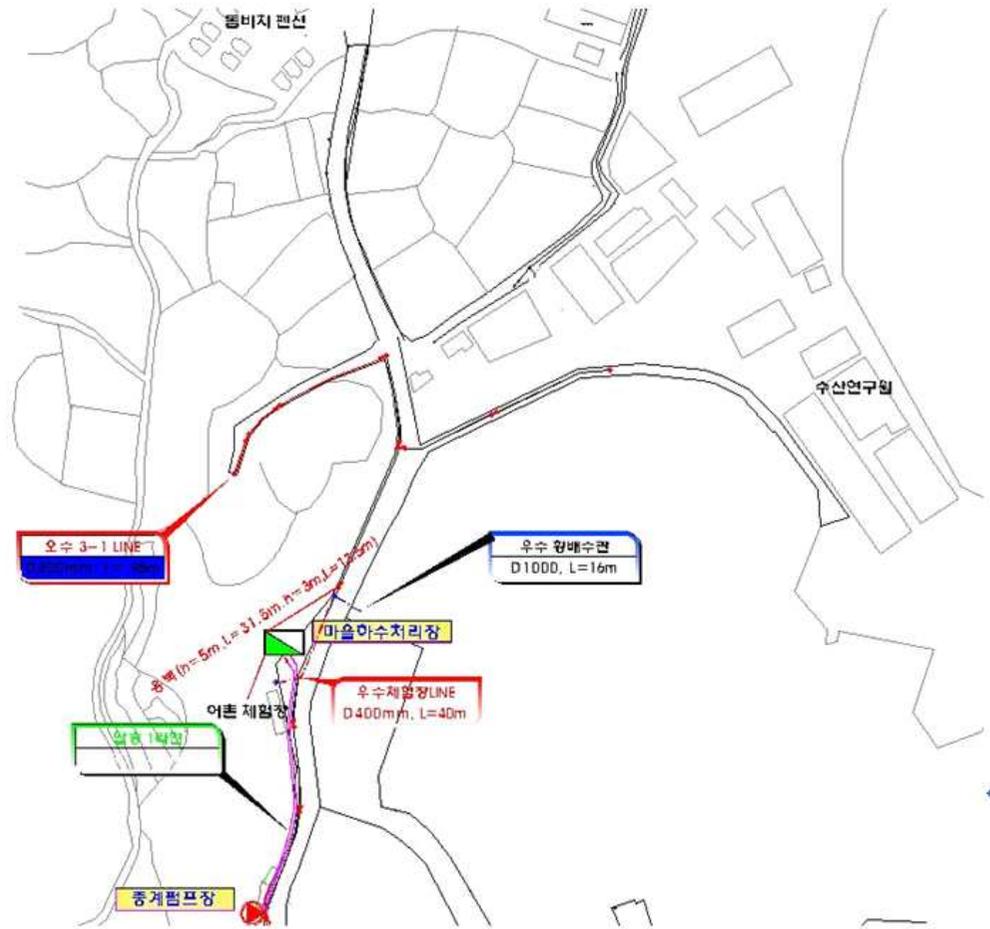


□ 두문포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사용 공고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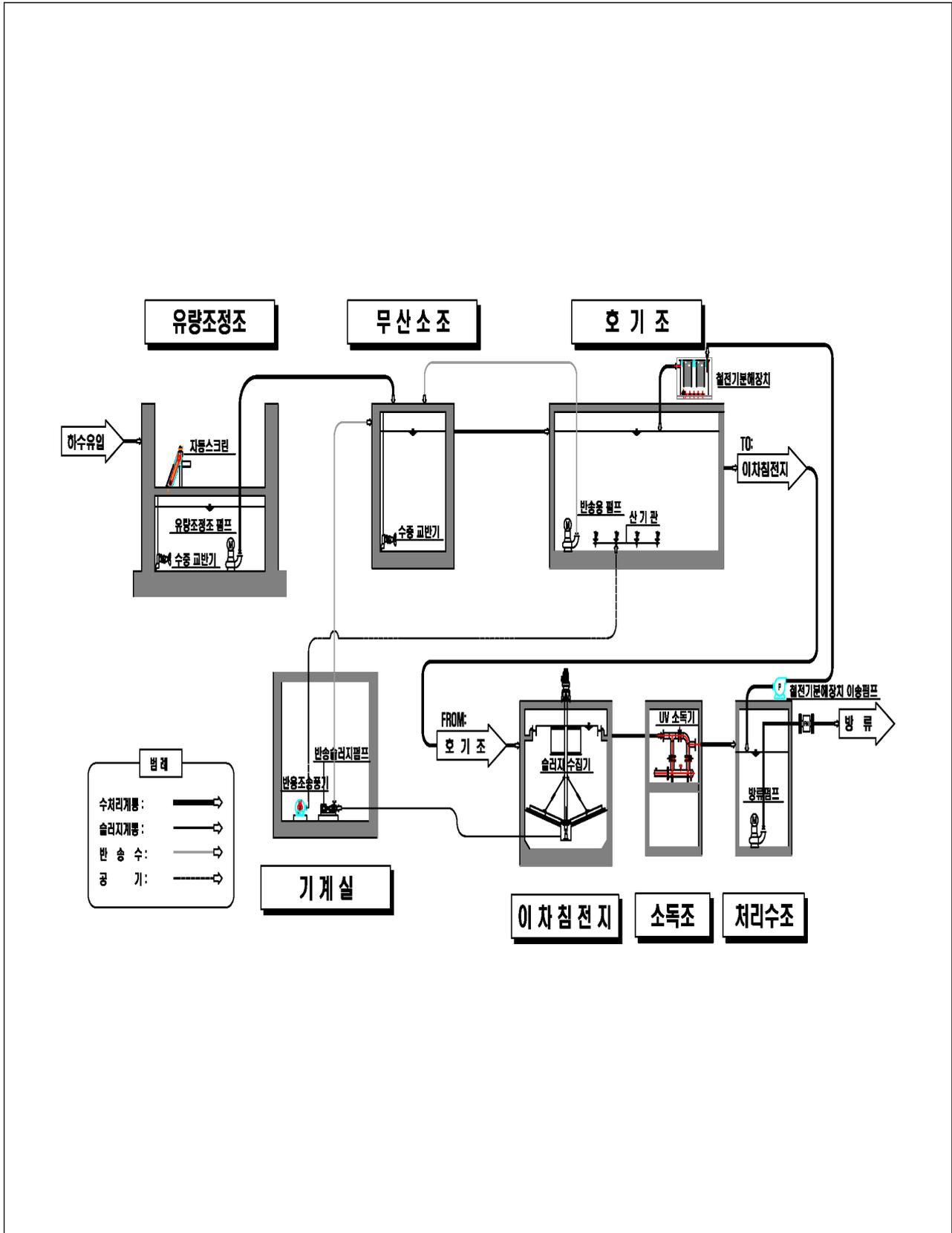


두문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도 사용 공고 도면 (2/ 2)

S = 1 : 1000



□ 두문포마을 하수처리 계통도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34-1번지 외 1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64.25	4	257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양면 나진리	산34-1	10.5	4	42		
	585-2	28.0	4	112		
	585-3	20.5	4	82		
	585-4	3.5	4	14		
	585-5	1.75	4	7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15.

여 수 시 장

공 고(수정)

「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돌산읍 군내마을 및 두문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공고(수정) 합니다.

2020. 1. 15.

여 수 시 장

1. 공공하수도의 위치 : 여수시 돌산읍 군내마을 및 두문포마을 일원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유입수질 · 용량

가. 군내마을

○ 유입수질

(단위:mg/ ℓ)

BOD	COD	SS	T-N	T-P
156.9	90.7	166.4	58.2	5.4

○ 유입용량 : 240m³/일

나. 두문포마을

○ 유입수질

(단위:mg/ ℓ)

BOD	COD	SS	T-N	T-P
160	120	180	60	7

○ 유입용량 : 55m³/일

3. 공공하수처리의 구분 : 분류식

4. 하수처리구역 면적 : (군내) 15.9ha / (두문포) 9.4ha

5. 열람서류 및 장소

가. 열람서류 : 하수처리구역도 및 기타 관련서류

나. 장 소 : 여수시 하수도과

6. 기타 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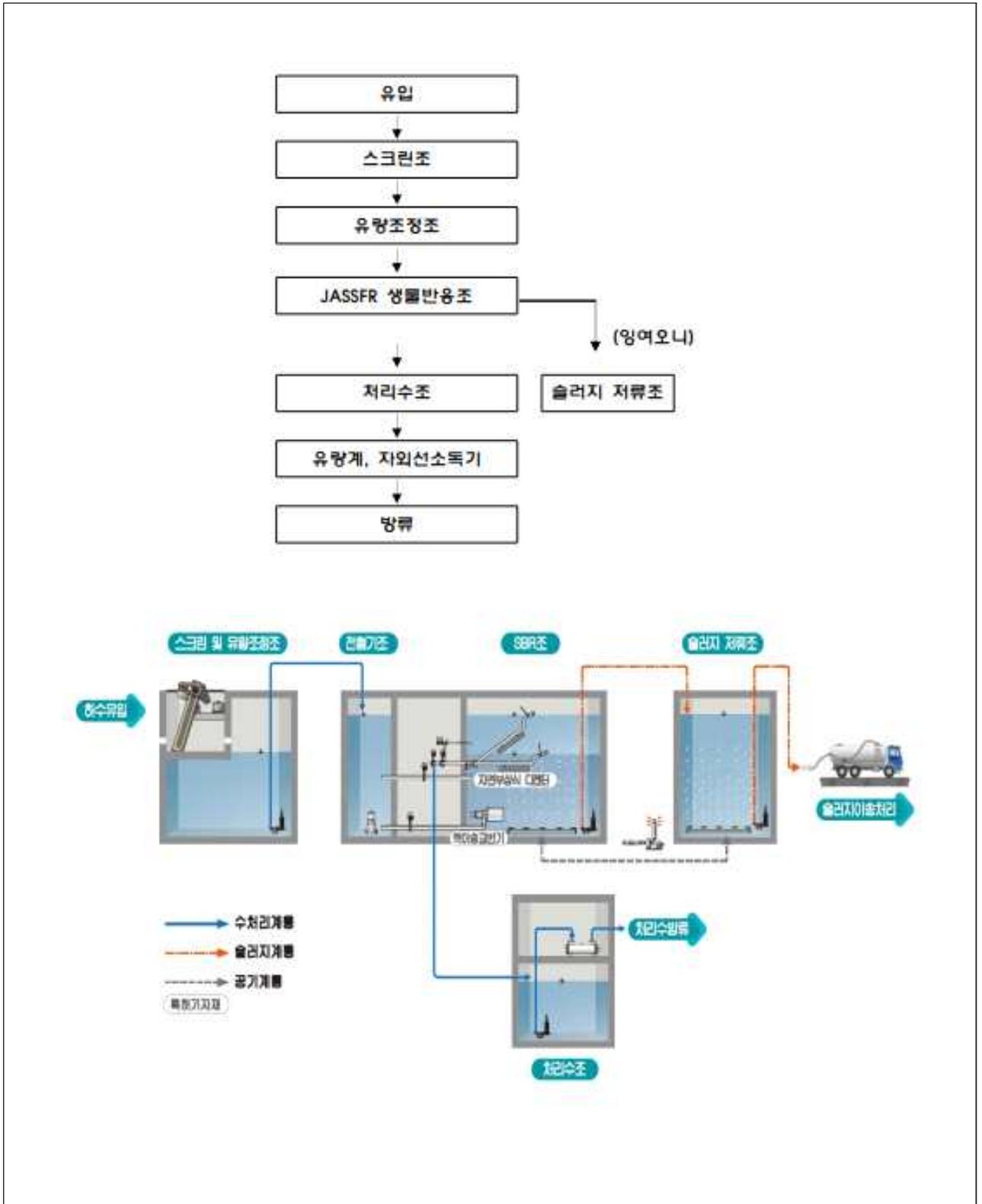
○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에게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하수도과(☎061-659-4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사용 공고 도면



□ 군내마을 하수처리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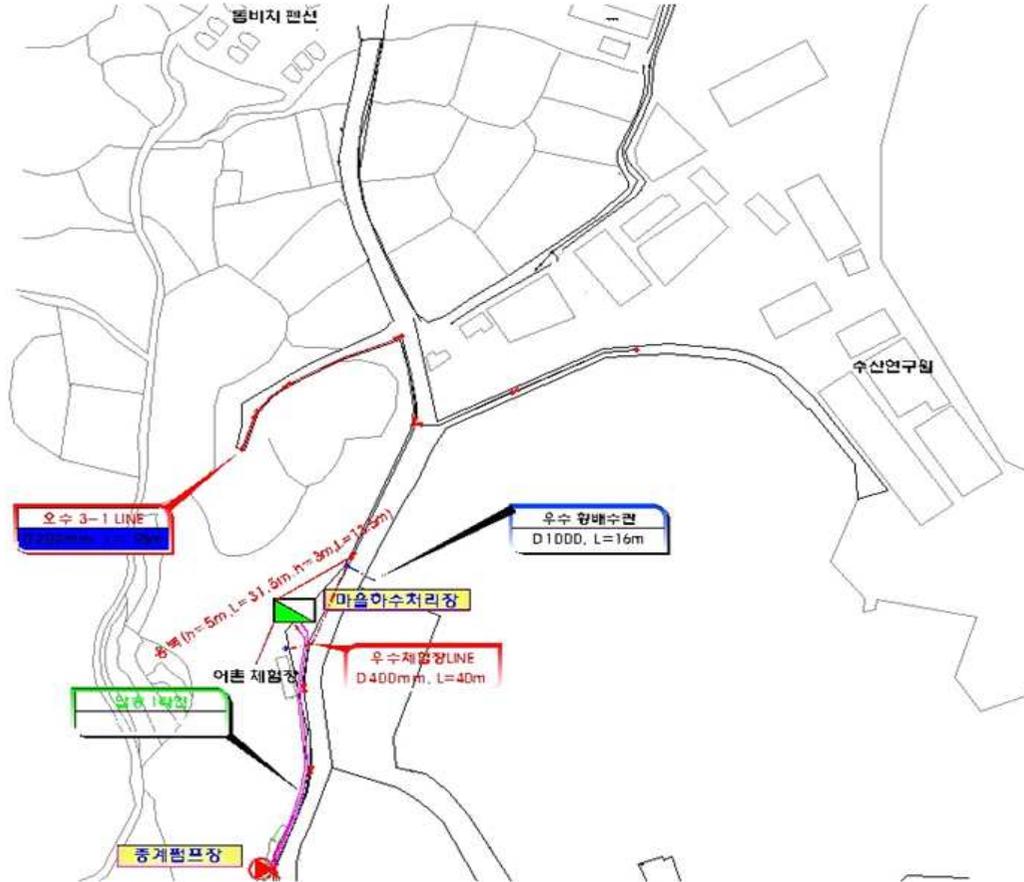


□ 두문포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사용 공고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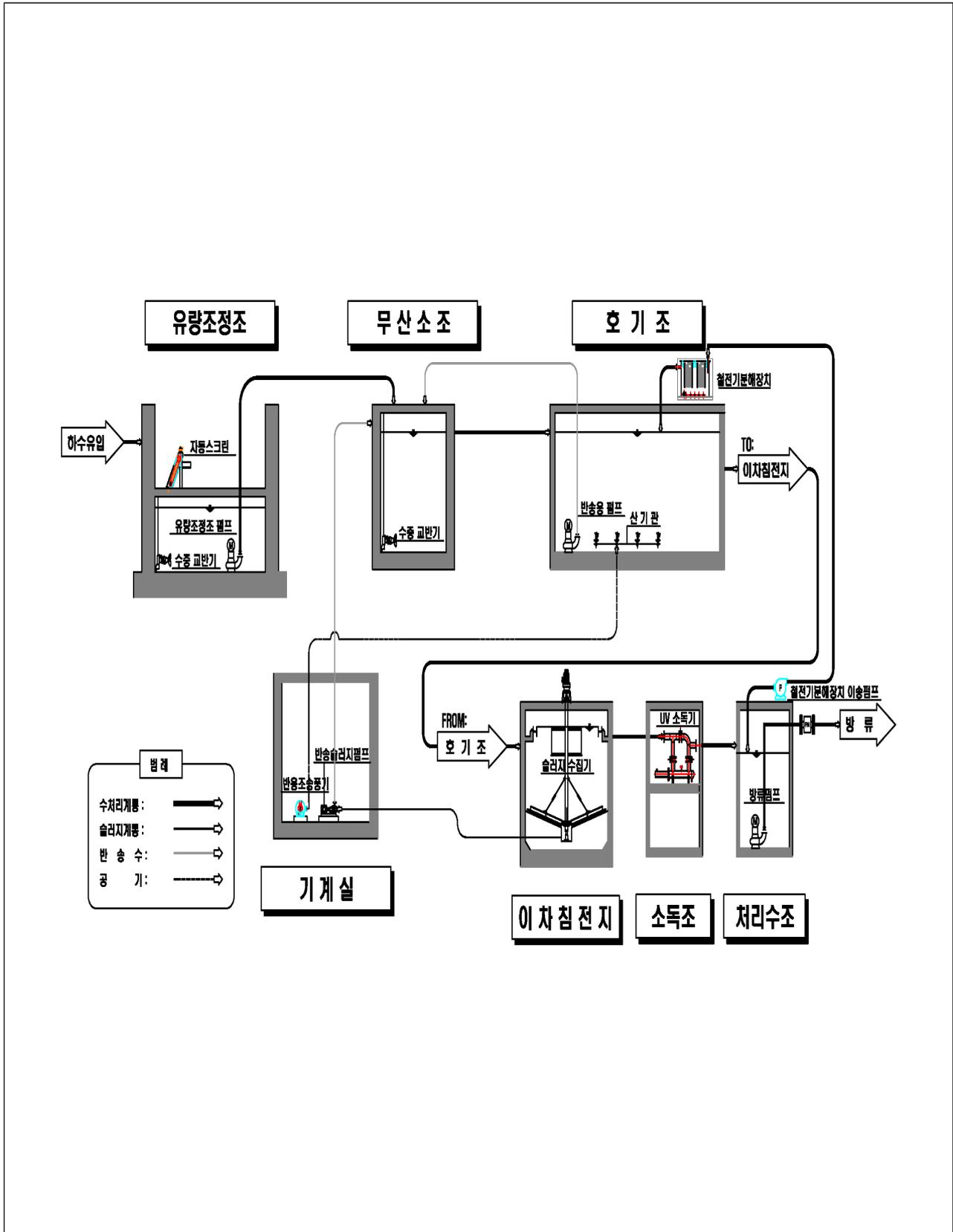


두문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도 사용 공고 도면 (2/ 2)

S = 1 : 1000



□ 두문포마을 하수처리 계통도



[여수시 공고 제2020-133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90-7번지 외 1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263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평사리	1395-8	41	6	263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15.

여 수 시 장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제1호,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폐문 부재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1. 15.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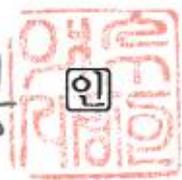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0. 1. 15. ~ 2020. 1. 31.(16일간)
3.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12조
5. 공고내용

업 종	업 소 명 (영업주)	영업소 소재지	청문일시	사업자등록 폐업일	처분내용
목욕장업	진흥사우나 (이*옥)	여수시 학동북 1길 15 (학동)	2020. 2. 13.	2019. 3. 31.	영업소 폐쇄

6. 유의사항
 - 위 공고 기간까지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직권 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 061-659-4387)

제1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여수시장 권오봉 인 

여수시 규칙 제734호

붙임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1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여부
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지원 세부기준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명당 1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탈 성매매 협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세부기준 및 내용(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생계비	① 탈 성매매 후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주거 지원비	① 탈 성매매 후 여수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주거지원비 지원 : 700만원 내외 (1명 기준 / 1회 지원) - 보증금 (임차권자 : 여수시장) - 월세 (1년 이내 지원)
직업 훈련비	① 여수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	• 월 3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 학원비, 수강료 등

* 프로그램 등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 신변안전 등 :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

탈 성매매 약속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여수시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지원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 내용 모두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1. 탈 성매매 후 조례에 근거하여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한다.

년 월 일

위 약속인

(서명)

여수시장 귀하

